

1. 박사자격시험 주요사항

1-1. 박사자격시험 응시자격

-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1년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.

1-2. 박사자격시험 응시분야 및 원서접수

- 박사자격시험은 기초시험(STS, STPP) 과 2 분야의 시험에 각기 응시하여 통과하도록 함.
 - 3분야 중 1분야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기초분야 과목을 통과하도록 함.
 - 기초시험 외의 2분야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각기 다른 2명의 전임교원 연구분야를 택하도록 함.
 - 전문가 과정 학생은 1분야를 <창의적 정책프로포절>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.
(2015년 봄학기부터 <창의적 정책프로포절>은 대체과목으로 적용하지 않음.)
- 박사자격시험 원서접수
 - 응시원서는 고사일 1달 이전에 지도교수 및 각 연구분야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.

1-3. 박사자격시험 형식 및 심사

- 박사자격시험의 구체적인 형식은 각 연구분야 담당교수가 결정함.
- 박사자격시험 심사는 담당교수와 제2평가자가 협의하여 진행하며, 제2평가자는 담당교수가 지정함.

1-4. 박사자격시험 결과 통보

- 박사자격시험 결과는 담당교수와 제2평가자가 협의하여 합격(Pass) 또는 불합격(Fail)으로 결정함.
- 불합격 시 응시분야당 1회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응시절차는 본시험과 동일함.
- 박사자격시험 통과에 대해선 지도교수가 각 응시분야별 담당교수와 협의 후 박사자격시험위원회에 추천하여 최종 결정함.
- 박사자격시험 통과 시 합격증을 교부함.
- 1년 6개월 이내(휴학기간 제외)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적됨.

2. 박사자격시험 [기초분야], [전공분야], [창의적 정책프리포절]

2-1. [기초분야: 두 과목을 통합하여 1분야로 간주함.]

- Science, Technology, and Public Policy
-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

2-2. [전공분야: 전임교원 연구분야를 새로 개발하여 응시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.]

- 박범순: History of Science, Biomedical and Health Policy
- 김소영: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,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
- 전치형: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(STS), Mobility Policy
- 이윤정: Environmental Politics, Urban Governance
- 그랜트피셔: Philosophy of Science Policy, Philosophy of Science
- 최문정: Social Justice and Technology, Aging & Technology Policy

2-3. [창의적 정책프리포절]

- <창의적 정책프리포절>은 지도교수 및 외부 전문가 1인의 지도 하에 작성하며 박사자격시험 필기시험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함.
- <창의적 정책프리포절> 작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는 박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함.
- 2015년 봄학기부터 <창의적 정책프리포절>은 대체과목으로 적용하지 않음.

제정 : 2012년 2월 10일

개정 1차 : 2012년 9월 11일 (2012년 가을학기부터 적용함.)

개정 2차 : 2015년 1월 22일 (2015년 봄학기부터 적용함.)

1. 박사과정운영지침

- 제4조 (자격시험) 학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 - <신설 1995. 9. 1>
 - ① 응시자격
 - 1.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(석사·박사학위 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이라 한다)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) 1년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<개정 2005. 6. 9, 2008.12.04, 2009. 4. 27>
 - 2.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7. 8.23>
 - ②자격시험 시기 및 횟수학과별로 학과장이 정하여 실시한다. <개정 1998. 3. 1>
 - ③자격시험의 방법 및 배점자격시험은 전공필기 시험, 서류심사,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되, 학과별로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형방법 및 배점을 마련하여 학과장/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<개정 1998. 3. 1, 2007. 2.13>
 - ④자격시험의 내용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이와 관련된 연구의 창의력을 중심으로 박사과정 학위취득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⑤합격자 사정학과별로 학과장/전공책임교수가 정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07. 2.13>
 - ⑥불합격자 처리응시허용 기한 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.
 - 제5조 (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요건)
 - ①지도교수는 당원 전임직 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(경력기간 계산은 학기단위)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1997. 7.25, 2007. 8.23>
 - ②전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전임직 교원은 지도교수와 함께 공동 지도교수로서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1997. 7.25>
 - ③비전임직 교원은 지도교수 활용지침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<개정 1997. 1. 1, 2001.12. 4, 2008. 8.19>
 - ④ <삭제 2008. 8.19>